

#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해당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하며,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0.(예정)]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등·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0.(예정)]에 홈페이지(http://yongin-dmapt.co.kr)에서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 받으시기 바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위장전입,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됨 (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20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23층, 6개동 총 350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주택형		59A	75A	75B	84A	84B	소계	
총 세대수		43	72	26	38	21		
해당 기관별 세대수 배정 (10%)	국가유공자	1(5)	2(10)	1(5)	1(5)	1(5)	6(30)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	1(5)	-	3(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10)	3(15)	1(5)	2	1(5)	9(45)	
	중소기업 근로자	2(10)	3(15)	1(5)	1(5)	1(5)	8(40)	
	장애인	경기도	1(5)	2(10)	1(5)	1(5)	1(5)	6(30)
		서울특별시	1(5)	1(5)	1(5)	-	-	3(15)
		인천광역시	-	1(5)	-	1(5)	-	2(10)
배정 세대수(예비자)		8(40)	13(65)	5(25)	7(35)	4(20)	37(185)	

- 당첨 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지정된 특별공급 청약일에 접수하여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구 분	공급 일정(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04.10.(금)	* 일간신문 및 분양 홈9페이지( <a href="http://yongin-dmapt.co.kr">http://yongin-dmapt.co.kr</a> ) * 분양문의 : 031-276-0525 (10:00 ~ 18:00)
건본주택 개관	2026.04.10.(금)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4.20.(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현장 방문접수 가능시간(10:00~14:00) ※ 자격입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6.04.29.(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26.05.11.(월) ~ 2026.05.13.(수) 3일간	* 장소 : 추후 별도 공지 * 시간 : 10:00 ~ 17:00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10월(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청약통장 미사용)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 분	경기도	그밖에 광역시(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및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각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청약통장 미사용)

■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관련법규
장애인	경기도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경기동부 보호지청 보상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호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등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등 해당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각각의 유형 구분 없이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 부여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특별공급)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IV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 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등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5.06.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상이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V 현장 및 분양사무실 오시는길

공 급 개 요 : 지하 2층, 지상 23층, 6개동 총 350세대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20번지 일원

견 본 주 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분 양 문 의 : 031-276-0525

<p><b>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20번지</b></p>	<p><b>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b></p>
	

### THE EST PREMIUM 6

- 12년 원스톱 명문교육**  
단지 앞 고진초 중, 고림고 등 우수급 교육여건 조성
-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K-반도체 클러스터 직후근접
- 막힐 없는 쾌속교통망**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고진역, 용인C 10분내 위치
- 잘 갖춰진 생활인프라**  
대형마트, 처인구청(예정), 중심상업지구 등 인접
- 쉼이 있는 힐링라이프**  
도심 속 여유를 선사하는 경안천과 단지 앞 문화공원(예정)
- 비규제지역 프리미엄**  
10.15 부동산규제 미지정 지역으로 프리미엄 상승 기대

### 용인 고림의 완성된 자리를 바로 누리다



\*본 안내문 내용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팸플릿 등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